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82
----------	------

2017년 9월 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 8. 31. 박호근 의원 외 23명

나. 회부일자 : 2017. 9. 1.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7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교육 문제 논의의 새로운 주체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을(자치구)과 학교의 협력은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마을결합형학교’ 등 마을과 학교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이원화·분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 협업 시스템 구축·보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교육4주체라 할 수 있는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간 협력과 연계를 근간으로 삼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마을)가 협력 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서울시의회는, 교육혁신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¹⁾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분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2014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어 5대 비전, 20대 교육협력 사업²⁾을 실현하는 내용의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한 바 있음.
 - 이 선언을 통해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는 역할 구분 없이, 양자간 협의한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지자체-교육청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였음.

〈표-1〉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민과 관이 협치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2. 소외받는 어린이 청소년이 없는 어린이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으로 21세기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4.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5. 서울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
2) ①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②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③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 마을 상생, ④ 공교육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총 4개 분야로 ‘15년 20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총 2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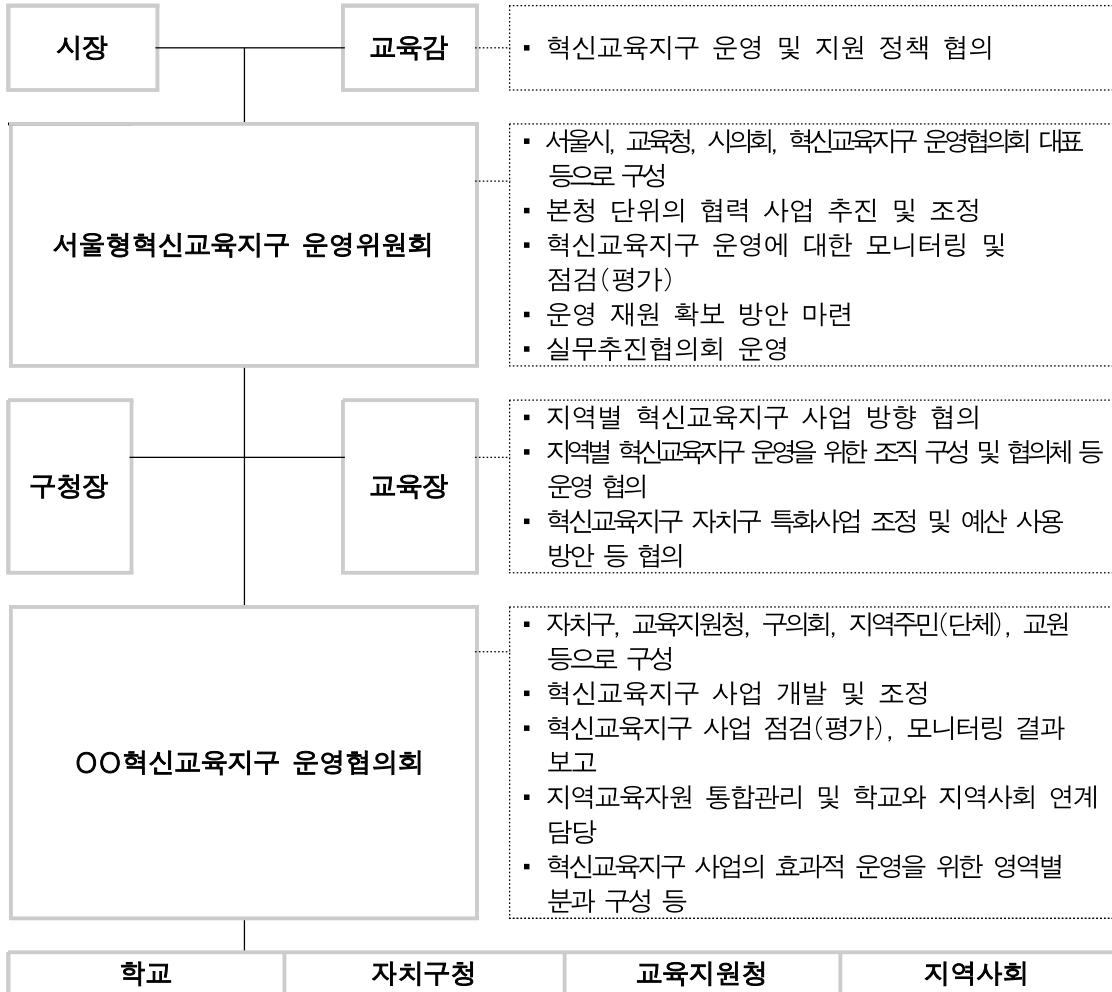
- 또한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였음.

〈표-2〉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주요 추진 경과

2017년	←	2016년	←	2015년
22개구 (기존20, 신규2)		20개구 (혁신12, 우선4, 기반4)		11개구 (혁신7, 우선4)
322억원 (시92, 교102, 구128)		279억원 (시89, 교90, 구100)		152억원 (시65, 교52, 구35)

- 혁신교육지구의 필수사업은 마을-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사업 등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특화사업(선택과제)이 추진되고 있음.
-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는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제고 등을 위해 직접 당사자인 학교와 교사는 물론 민·관·학 거버넌스의 협력적 작동이 중요함.
-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학교 및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함미흡, 사업의 공통적인 목표·방향 제시의 어려움, 이질적 행정기관으로 인한 실무 운영의 문제, 교육주체 간 소통의 어려움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를 흐리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있어왔음.

〈표-3〉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추진체계



○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학 거버넌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교육과정의 다각화 및 지역 특성화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견 조희한 결과(참고자료 2),
 -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교육재원 보조 외에 교육청의 교육방식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자치구(구청장)와 교육감에게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권한도 없는 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영역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신함.
 - 교육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운영에 있어 교육위원회 정례회 기간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일정조정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회신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082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31일

발 의 자 : 박호근, 김혜련, 김영한,
이윤희, 이해경, 김현기,
문형주, 김미경, 김문수,
황규복, 우창윤, 박마루,
김제리, 김기대, 이숙자,
김동윤, 김인호, 이정훈,
오경환, 한명희, 유 용,
강성언, 김경자(강서),
오봉수 의원(24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교육 문제 논의의 새로운 주체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을(자치구)과 학교의 협력은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마을결합형학교’ 등 마을과 학교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이원화·분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 협업 시스템 구축·보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교육4주체라 할 수 있는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간 협력과 연계를 근간으로 삼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마을)가 협력 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서울시의회는, 교육혁신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교육 문제 논의의 새로운 주체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을(자치구)과 학교의 협력은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마을결합형학교’ 등 마을과 학교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이원화·분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 협업 시스템 구축·보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교육4주체라 할 수 있는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간 협력과 연계를 근간으로 삼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마을)가 협력 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교육혁신사업이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17. 8. 3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